

부산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나60816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나6081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가단302205 판결

전문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해

담당변호사 문주호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다영

변론 종결 2019. 4. 5

판결선 고 2019. 5. 10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8가단30220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부산 기장군 C 전 109㎡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도면 표시 11,12, 13,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화장실 3㎡, 같은 도면 표시 19,18, 17,16, 15, 20,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건물 11㎡, 같은 도면표시 8,9, 10, 11, 12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상에 설치된 담장을 각 철거하고,② 같은도면 표시8, 9, 10, 11, 12, 13, 6, 15, 20, 5, 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선내 부분 35㎡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특히 제1심 판결의 별지 도면 표시 19, 18, 17, 16, 15, 20,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건물 11㎡(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까지 철거하게하는 것은 피고 건물에 미치는 위험성 및 비용,원고가 얻는 효용 등에 비추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피고 건물의 면적이

줄어 그 효용성이 감소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 내지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소유권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다거나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도판사 김세용판사 윤소희